

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 06. 07

2. 개정내용: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상품명: 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 (구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『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(이하 “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”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외화에 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~ 제 3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4 조 가능통화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통화는 USD, EUR, JPY, GBP, CHF, AUD, CAD, NZD,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,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한다.</p> <p>제 6 조 ~ 제 12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13 조 기타 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 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(구 하나은행) 제 21 조 제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.</p>	<p>상품명: 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(이하 “이 등록 발행 양도성예금증서”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 약 외에 『외화에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~ 제 3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4 조 가능통화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통화는 15 개 통화로 USD, EUR, JPY, GBP, CHF, AUD, CAD, NZD, HKD, SGD, DKK, NOK, SEK, KWD, CNY 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,000 상당금액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</p> <p>제 6 조 ~ 제 12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13 조 (약관의 변경)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에금거래기본약 관 제 13 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p>	<p>상품명 변경</p> <p>상품명 변경 및 (구 하나은행) 문구삭제</p> <p>가능통화 확대 (8개통화 -> 15개통화)</p> <p>문구 추가 “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” 문구추가</p> <p>약관의 변경 표현 수정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비적용